

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문(안)

- **시행기간** : 2016. 2월 ~ 예산소진 시까지
- **신청요건**
 - ☞ 포항시 거주 65세 이상 지역주민(1세대1인)
 - ☞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
 - ※ 공공근로, 노인일자리 참가자 제외
- **신청방법** : 포항시 읍, 동사무소
- **구비서류** :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, 수거된 광고물, 사진자료(현수막)

● 보상금 지급기준

구 분	적 용 기 준	보 상 기 준	시 행 일 자
현 수 막	5㎡이상	2,000원/장	'16년 6월 1일 ~ 예산소진 시
	2㎡이상 5㎡미만	1,000원/장	
	2㎡미만	500원/장	
전단지(벽보)	30cmx40cm이상	1,000원/50장	시행 중
	30cmx40cm미만	1,000원/100장	
명함형전단지	6cmx10cm이하	1,000원/400장	

* 1인당 월 20만원 이내 지급

● 수거대상

수거보상대상	제외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주, 가로수, 가로등주, 건물벽면, 도로펜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▶ 도로변 전주, 주택가 담장(벽) 대문 등에 부착된 전단지(벽보) ▶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코팅형 전단지 ▶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형 전단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정게시대,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▶ 부착·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, 벽보, 전단지 ▶ 행정용, 선거용, 기타 협의 된 광고물 ▶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▶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▶ 6개월 이상 경과된 보상광고물 ▶ 신문지 전단지

● **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**



현수막

벽보(전단)

명함형 전단

● **제외대상 광고물**



지정게시대
게시판에 부착

행정용, 선거용
기타 협의 된 광고

아파트 현관 내부
부착 광고

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